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도 이는 지급방식에 불과할 뿐 당초부터 1입금상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연간단위로 결정된 연봉총액을 16으로 균등 분할하여 이를 매월 또는 특정시기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월(12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봉액은 1입금상정기간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16으로 균등 분할된 연봉액 중 특정시기(귀 집의상 1월, 4월, 7월, 10월)에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1입금상정기간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국중합노무법인합사무소 (031-877-782-3)

Q 상여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한다. 즉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산입한다. 정근수당 등 1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산입한다. 월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만근할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나온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킨다. 즉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발생한 월차휴가에 대한 보상금만 산입한다.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임금이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행정해석은 1년분을 분할 계산하여 3개월분만 산입하라는 입장임에 반하여 관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3개월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산입하라는 입장이다.

Q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급물을 연간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임금(예컨대 상여금)을 균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어른용 계량 기를 별도로 부착할 수 있습니까?

A 동일 전기사용 장소내에 전기 공급방식이 서로 다른 저압사용설비가 있는 경우에 전기공급방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4W 220V/380V를 자율공급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전압이 380V이면 별계량기 불가능하므로 기존 10 2W 220V 구좌를 304W 220V/380V로 공급방식을 변경, 중설 신청하여야 합니다.(에어컨 사용전압이 30 220V일 경우에는 220V 공급 가능 허용 범위내에서는 전기공급 방식 상이로 별구좌 공급가능)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Q [계약종별이 다를 때 전기사용 계약]

일반용 전력은 적용받고 있는 상가 건물 옥상에 주택을 증축하였는데 이 경우 주택용으로 별도의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까?

이할 경우에는 계약 종별로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부분에 대하여는 별계량하여 주택용전력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전기공급방식이 다를 때 전기사용 계약]

10 2W 220V30를 공급받고 있는 식당에 30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은데 에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소아과장 이종승



마토, 양파 또는 지방이 많은 음식물들이 통증 유발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를 보전적 요법으로 환자를 안심시키고 두통을 초래하는 유발 인자를 찾아내어 일상생활에서 제거해 주고 학업과 관계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주고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교정에 의해서 전체 소아 편두통 환자의 50%에서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현저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으로는 두통 발작시 통증과 오심이나 구토를 완화 시키는 급성기 예방치료법, 반복되는 두통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 예방치료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타이레놀이나 부루펜 같은 해열진통제와 진통제가 주로 사용됩니다. 급성기 예방치료제로 ergotamine 제제가 사용되나 전조 증상을 인지하고 스스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소아의 편두통 치료에는 기여도가 낮습니다. 학업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한 두통이 한달에 2-4번 이상 빈번히 생기는 경우 장기적 예방치료법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천병원(031-539-9114)

소아 두통(1)

소아 연령에서의 두통은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서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7세 전후 전체 소아의 약 2.9%가 반복되는 빈번한 두통을 경험하고 1.4%가 편두통을 경험하게 되며, 나이가 들수록 두통의 빈도는 증가하여 15세 경에는 54%에서 간헐적인 두통을 경험하고 15%는 빈번한 두통을 호소하며 5.3%는 편두통을 경험할 정도로 두통은 소아 연령에서 흔한 증상입니다. 이와 같이 높은 빈도는 두통이 두경부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질환, 환자의 성격,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 요인들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두통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두통이 반복되나 두통 사이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인 기능성 두통입니다.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환청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또한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급여자의 주채무를 수익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지만 내기바둑에의 계획적인 유인, 내기바둑에서의 사기적 행태, 도박자금 대어 및 회수과정에서의 폭리성과 갈취성 등에서 드러나는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내기바둑에의 수동적인 가담, 도박채무의 누적으로 인한 도박의 지속, 도박채무변제를 위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의 양도 등으로 인한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급여자로서는 그 주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甲도乙의 불법성이甲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수만 있다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해볼 여지도 있을 듯합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Q 【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이 더 큰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甲은乙의 유인으로 내기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서 그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내기바둑의 상대였던乙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내기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약 2000만원에 이르렀고,甲이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乙은甲의 직장까지 찾아가 즉시 변제치 않으면 직장에 알려 해고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甲은 가족들에게조차 위 사실을 숨기고 혼자 고민하던 중,乙의 협박대로 직장으로부터 해직당할까 두려워 결국甲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乙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데 알고보니乙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甲에게 접근하여 내기바둑을 이끌면서 자금도 빌려주고 하였던 것인바, 이 경우

甲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요?

A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관례에서는,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자금도 빌려주고 하였던 것인바, 이 경우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이에 대한 개방적인 논의와 함께 현실적인 노인의 성에 관련된 문제 파악과 적절한 중재방안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고 긍정적으로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노인의 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딪히는 제 문제의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노인의 성"에서 발췌한 내용임. *문의: 포천가족·성 상담센터(031-542-3171)

노인의 성문제의 다양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육구의 다양화로 인하여 노인의 성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 성문제는 신체적·정신적·가족관계·환경적인 문제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그러나 노인의 성문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전문한 실정이다.

인간 모두의 염원을 단지 생명 연장 측면에서의 장수가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통하여 노인의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먼저 추계신고로 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자는 전년 수입금액이 연4,800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그 이상인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도·소매업 7,200만원, 제조·음식·건설업 등은 4,800만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은 3,6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이며, 그 이상의 수입금액인 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년 수입금액이 8천만원으로 서비스업 단순경비율 신고구간인 3,6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세무서의 결정이 맞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개인은 실제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성실히 보관하시고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를 하셔서 본인의 실질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Q 【종합소득세는 기장신고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본인은 보험설계사로 2006년 보험모집수당 1억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 안내문에 기재된 소득금액(단순경비율 금액)으로 확정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2004년 수입금액이 8천만원으로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라고 하여 추가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처분이 맞는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기장을 하여야 하는지요?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복식기장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률의 가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아주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에게는 국제청에서 정한 일정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추계율을 고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세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A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1년간 총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 담은... ■건강을 선물하는 알뜰가격 2만원대 부터...

꽃샘 종합선물세트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꽃샘고려홍삼골세트 홍삼골 1000g



꽃샘특선봉밀1호 집화골 2200g



꽃샘기획세트1호 대추꿀차 1200g / 집화골 1200g



꽃샘기획세트2호 영지꿀차 1200g / 집화골 1200g



GS기획세트 집화골 1200g / 솔잎꿀차 1200g



꽃샘프리미엄골세트1호 아카시아 1200g / 집화골 1200g



꽃샘토종고기구3호 토종꿀 1200g



꽃샘토종고기구1호 토종꿀 2400g



꽃샘꿀차세트 영지꿀차 1200g / 대추꿀차 1200g



꽃샘5호 꿀대추차, 꿀유자차, 꿀솔잎차 x 1000g



꽃샘8호 영지꿀차 1200g / 홍삼100 70ml x 7포, 대추꿀차 1200g



꽃샘4호 영지꿀차, 솔잎꿀차, 대추꿀차 x 600g